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1가합53024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후

담당변호사 이종건, 류권영, 이상윤

피 고 1. B 유한회사

2. C 합자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진안

변 론 종 결 2022. 9. 2.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D 주식회사가 발행한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중 권면총액

11,000,000,000원, 제1회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권면총액 1,550,000,000원, 제2회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권면총액 950,000,000원에 관하여, 피고 B 유한회사, 주식회사 E, F 사이에 2019. 8. 16. 체결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매매계약 및 피고 B 유한회사, 피고 C 합자회사, 주식회사 E, F 사이에 2019. 11. 25. 체결된 합의를 2,576,420,35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 합자회사, 주식회사 E, F 사이에 D 주식회사가 발행한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중 권면총액 4,000,000,000원에 관하여 2019. 11. 25. 체결된 전환사채 매매계약을 2,576,420,35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76,420,3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C 합자회사(이하 '피고 PEF'라 한다)는 2017. 11. 2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4. 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9항 제1호에 의하여 설립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다.

2) 피고 B 유한회사(이하 '피고 SPC'라 한다)는 2018. 3. 14.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로, 그 사원은 피고 PEF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다.

나. 피고 SPC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1) 피고 SPC는 2018. 3. 19.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SPC가 D가 발행하는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권면총액 110억 원, 이하 '제3회 전환사채'라 한다)를

인수대금 11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인수하였다.

2) 피고 SPC는 2018. 3. 19. E과 사이에, 피고 SPC가 E로부터 D가 발행한 제2회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권면총액 20억 원, 이하 '제2-1회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 및 제3회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권면총액 27억 원, 이하 '제3회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4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PEF와 E은 2018. 3. 19. 피고 SPC의 사원으로서 사원간 계약을 체결하여 각 110억 원, 47억 원을 피고 SPC에 출자하기로 하였고, 다만 E은 위 2)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SPC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 합계 47억 원과 출자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그 출자의무를 이행하기로 하였다.

4) 피고 SPC는 2018. 4. 30. E과 사이에, 피고 SPC가 E로부터 D가 발행한 제1회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권면총액 15억 5,000만 원, 이하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 및 제2회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권면총액 9억 5,000만 원, 이하 '제2-2회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고 SPC가 D로부터 인수하거나 E으로부터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D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아래와 같다.

구 분	권면총액	약 칭
제1회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15억 5,000만 원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제2회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0억 원	제2-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9억 5,000만 원	제2-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제3회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7억 원	제3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10억 원	제3회 전환사채

다. 피고 SPC와 E 측 사이의 2019. 8. 16.자 매매계약

1) 피고 SPC, E 및 F1)는 2019. 8. 16. E 측이 피고 SPC가 보유하고 있는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제2-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제3회 전환사채를 매매대금 합계 17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제1조 대상사채의 양수도

3. 대상사채의 권면총액

- ① 제3회 전환사채: 권면총액 110억 원
- ②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15억 5,000만 원
- ③ 제2-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9억 5,000만 원

제2조 사채의 인도 및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 ① 대상사채의 매매대금은 총 174억 원으로 한다.
- ② 양수인은 2019. 8. 26. 또는 그 이전으로서 당사자들간 합의된 날에 매매대금의 25.8621%에 해당하는 45억 원을 양도인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고(생략)
- ③ 양수인은 2019. 10. 15. 또는 그 이전으로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날에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공제한 금액(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E 측은 2019. 8. 26.부터 같은 해 9. 11.까지 피고 SPC에게 계약금 합계 45억 원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E 측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 SPC는 2019. 10. 24. E 측의 요청에 따라 잔금 지급기일을 2019. 10. 15.에서 2019. 12. 31.로 연장해 주었다.

라. 피고들과 E 측 사이의 2019. 11. 25.자 변경계약 및 매매계약

1) 피고 SPC, 피고 PEF, E 및 F는 2019. 11. 25.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제2조(대상계약의 변경)

- ① 당사자들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상인 대상사채를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제2-2회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변경하고, 제3회 전환사채를 대상사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② 당사자들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30억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E 측이 기지급한 계약금 45억 원 중 30억 원을 매매계약에 충당하기로 한다. E 측이 기지급한 계약금 중 나머지 15억 원은 이를 E 측에 반환하는 대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 SPC는 위 금원을 피고 PEF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3조(피고 SPC의 해산 및 청산)

① 당사자들은 (...) 피고 SPC가 보유하고 있는 D 발행의 (1) 제3회 전환사채는 피고 PEF에게, (2) 제2-1회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제3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E에게 각각 현물로 분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들은 제1항에 따른 현물분배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피고 SPC를 해산하고, 피고 SPC가 해산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고 SPC를 청산하기로 한다.

제5조(제3회 전환사채의 처리)

① E 측은 피고 PEF로부터 제3회 전환사채(CB) 중 권면총액 40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매매대상 CB’)을 74억 원에 양수하여야 한다. E 측은 매매대금을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1. 30억 원은 2019. 12. 16.까지 계약금으로 피고 PEF에게 지급. E 측은 위 금액 중 15억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5억 원은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2. G로부터 분배받은 모든 금액을 충도금으로 피고 PEF에게 지급.
3. 나머지 잔금을 2020. 6. 30.까지 피고 PEF에게 지급.

③ 피고 PEF와 E 측은 (...) 전환사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E 측은 잔여 전환사채 부분이 최대한 신속하게 변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E 측은 자회사 매각 등으로 D가 금원을 취득하는 경우 위 금원이 잔여 전환사채의 사채원리금 상환 용도로 최우선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E 측은 잔여 전환사채 부분과 관련하여 D가 피고 PEF에 부담하는 사채원리금채무 및

기타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한다.

2) 피고 PEF, E 및 F는 2019. 11. 25. 이 사건 변경계약 제5조 제3항에 따라, E 측이 피고 SPC가 보유하고 있는 제3회 전환사채 중 권면총액 40억 원 부분을 매매대금 7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전환사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와 E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9. 8. 26. E에게 20억 원을 변제기 2020. 2. 26.(6개월 후), 이율 연 10%, 연체이율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4호증, 을 제1, 5, 7, 21, 22, 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 8. 26.경 E이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으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2019. 8. 26.경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채무자인 E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E에 대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20억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다. E 측은 2019. 8. 16. 피고 SPC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11. 25. 피고들과 이 사건 변경계약 및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채무를 부담함에 따라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 변경계약 및 제2차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대여원리금 합계 2,576,420,35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76,420,3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다면,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채무 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2)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에 관한 피보전채권 성립 여부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2019. 8. 26. 체결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 후에 발생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 전에 이미 대여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교섭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구체적 협의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대여금채권이 성립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변경계약 및 제2차 매매계약에 관한 피보전채권 성립 여부

이 사건 변경계약 및 제2차 매매계약은 원고의 대여금채권 발생 후에 체결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경계약 및 제2차 매매계약상 채무는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상 채무의 이행방법을 일부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과 별개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 및 제2차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E 측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2019. 10. 15.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그 이행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 및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E이 이 사건 변경계약 및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상 채무보다 더 무거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즉 E 측은 최초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SPC로부터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제2-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제3회 전환사채를 합계 17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E 측은 이 사건 변경계약 및 제2차 매매계약으로 ㉠ 피고 SPC로부터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제2-2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30억 원에 매수하고, ㉡ 피고 PEF로부터 제3회 전환사채 중 권면총액 40억 원 부분을 74억 원에 매수하며, ㉢ 제3회 전환사채 중 권면총액 70억 원 부분은 D가 최대한 신속하게 사채원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E 측이 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결국 E 측이 이 사건 변경계약 및 제2차 매매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액 또한 합계 174억 원(= 30억 원 + 74억 원 + 70억 원)으로 변함이 없다.

③ 원고는, E이 이 사건 변경계약 및 제2차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PEF에 대하여 74억 원의 매매대금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E 측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 당시부터 피고 SPC로부터 제3회 전환사채를 매수하기로 하여 피고 SPC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 SPC의 사원인 피고 PEF와 E이 피고 SPC를 해산·청산하기로 하면서 피고 PEF의 출자금으로 인수하였던 제3회 전환사채는 피고 PEF에게 현물로 분배하고, E이 출자하였던 제2-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제3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E에게 현물로 분배하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매도인이었던 피고 SPC를 제3회 전환사채의 귀속예정주체인 피고 PEF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E 측이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채무와 별개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원, 판사 이종찬, 판사 전승환

1) F는 E의 주식 35%를 보유한 E의 최대주주이다. E과 F를 합하여 이하 ‘E 측’이라 한다.